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운영 내규

1996.03.01. 制定
2004.06.15. 改定
2005.01.14. 改定
2006.06.15. 改定
2007.06.30. 改定
2010.06.30. 改定
2018.01.30. 改定
2021.06.14. 改定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중어중문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18.01.30.신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2018.01.30.신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중어중문학과 소속 교수들은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2018.01.30.신설)

제4조 (필독서) 석·박사과정의 첫 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첫 학기 초부터 중국어학과 중국문학 두 전공 중 해당 전공의 필독서를 정독하여 논문지도교수 신청 이전까지 학생이 희망하는 해당 전공 교수의 점검을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논문 지도를 받도록 한다. 중국어학전공 예정자는 王力的『漢語史稿』를, 중국문학전공 예정자는 劉大杰의『中國文學發展史』를 필독서로 한다. 필독서는 학생의 전공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목록 외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996.03.01.제정, 2004.06.15.개정, 2007.06.30.개정)

제3장 교육과정

제5조 (학위논문 심사 신청 전 학술발표 및 논문게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이전까지 박사과정 학생은 학술발표회(대외) 또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004.06.15.신설, 2007.06.30.개정, 2010.06.30.개정)

제6조 (박사과정의 중국어 구사능력 배양)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중국, 대만 등 중국어 생활권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중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어 구사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이행 사항을 면할 수 있다.(1996.03.01.제정, 2004.06.15.개정)

제4장 자격시험

제7조 (종합학력시험)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종합학력시험을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석사과정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종합학력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2005.01.14.신설)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 공히 KCI등재 이상 학술지 게재 논문 1편당 2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게재 논문은 제1저자 100%, 제2저자 75%로 적용하고, 종합학력시험 신청일 이전에 게재되어야 한다.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2018.01.30.신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종합학력시험을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과목 중, 석사과정은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합격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2005.01.14.신설, 2018.01.30.개정)

제10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과목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규정을 별도로 적

용한다. 내국인 학생은 영어 혹은 중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만 대상 과목으로 한다. 공인 어학 성적에 따른 면제 기준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1.06.14.개정)

제5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 취득은 학위논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재학 중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의 교과과정을 수료한 후, 제반 자격시험합격 및 학위논문 작성·심사·통과를 학위취득의 조건으로 한다. 석사학위 과정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2018.01.30.신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석사학위 과정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2018.01.30.신설)

제6장 학위논문

제13조 (학위논문 예비발표회 및 심사) 석·박사학위논문은 반드시 학위논문 예비발표회를 거치도록 한다. 예비발표회 신청은 대학원 학사일정의 석·박사과정 논문심사 신청 시작일 10일 이전까지이며, 발표는 석·박사과정 논문심사 신청기간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1996.03.01.제정, 2004.06.15.개정, 2006.06.15.개정, 2007.06.30.개정, 2010.06.30.개정, 2018.01.30.개정)

제14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학위논문을 연구논문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는다. 향후 논문대체 심사절차에 대한 시행 여부는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2018.01.30.신설)

제15조 (논문대체 제출) 학위논문을 연구논문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는다. 향후 논문대체 제출에 대한 시행 여부는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2018.01.30.신설)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6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01.30.신설)

부칙[2004.06.15.] : 이 개정내규는 2004학년도 2학기 입학자[2004학년도 2학기 입학자와 같은 학기에 복학, 재입학, 편입학한 자 포함]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구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시 개정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05.01.14.] : 이 개정내규는 2005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06.06.15.] : 이 개정내규는 2006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07.06.30.] : 이 개정내규는 2007년 9월 재학 및 입학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10.06.30.] :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 현재 재적 학생 및 2010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18.01.30.] :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 현재 재적 학생 및 2018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1.06.14.] : 이 개정내규는 개정일 현재 재적 학생 및 2021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